

한국 사법 통역 제도에 관한 재고(再考)

류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Hyunju Ryu (2012), Revisiting Judiciary Interpreting in Kore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Korean system of judiciary interpreting from an interpreter's perspective stemming from direct practices and indirect observation. Korean courts have an interpreter registry program where prospective interpreters are recommended and screened based on degrees and previous English-speaking work experiences including interpreting. However, non-registered interpreters and volunteers occasionally do interpreting work, which means that the current court interpreter program doesn't have strict guidelines for employing interpreters, let alone accreditation & certification systems. The present paper argues that evaluating the current registry interpreters' competence and providing mandatory refreshing courses and seminars for both interpreters and 'clients' (i.e. legal professionals and administrative staff in courts) are preconditioned before the certified accreditation system is fully introduced and put in place as the current system doesn't guarantee competent interpretati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eywords: community/court/legal/judiciary interpreting, accreditation, certification, competent interpretation

1. 사법 통역 제도

1.1. 정의와 명칭

본 연구는 법정 통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법 통역(judiciary interpreting)을 고찰한 것이

다. 용어 면에서 사법 통역보다는 법정 통역(court interpreting)이 일반적으로 더욱 널리 통용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정 통역사는 법정(courtroom)에서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통역사는 소송 사건 심리 이전부터 체포에 걸쳐 판결을 통해 양형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법 처리 전체 과정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비중 있는 것이 재판 과정이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법정이며 결국 이곳에서 선고가 내려지므로, 사법 재판 과정의 대표적 성격으로서 법정 통역이란 명칭이 사법 통역을 지칭하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법원에서 직접 통역사에게 연락을 취해 의뢰가 이루어지고 공소장을 비롯해 관련 자료를 법원을 통해 제공받기 때문에 통역사들 사이에서는 ‘법원 통역’라고 회자되곤 한다. 정확히 말하면 법원은 이러한 일을 하는 행정 분야(청사)와 재판을 하는 법정으로 이루어진 사법 기관이다. 그러나 이 법원 통역은 경찰 신문이나 변호사 접견과 같이 경찰서나 병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법원 안의 법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피고인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진행되거나 신청인(민사)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 등 사실상 법원 밖에서도 ‘법원 통역’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법과 관련된 통역이므로 외국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법 통역’(legal interpreting) 혹은 ‘사법 통역’(judiciary interpreting)이라고 통칭할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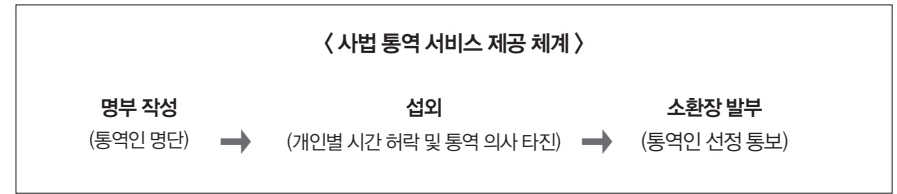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이유에서 통역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법정 통역’이라는 용어가 통역사들 사이에서 또 외국 통역 연구에서 가장 선호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우리말인 이 용어가 법정(법원)에서만 이루어지는 협의의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용어로서 ‘사법 통역’이란 명칭을 대신 사용하기로 한다.

1.2. 한국의 사법 통역

1.2.1. 현안 진단

우리나라에는 국가 혹은 지방 사법 당국에서 운영하는 사법 통역사의 자격 인증 제도가 없다. 대신 각 지방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기반으로 ‘통역인 명부’(registry, roster)¹를 작성하고 여기에 의거하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적 연락을 통해 통역인을 섭외하게 된다. 이후 섭외가 되면 공식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는 ‘통역인 소환장’을 발부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통역인을 지정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 제도가 없는 만큼 통역 종류 및 수준별, 사건별 지정 통역인에 대한 분류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선정 방식은 명부에 있는 통역인 명부를 근간으로 통역인에게 의향을 먼저 묻고 시간이 되어 통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여러 명의 통역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때 통역인 입장에서는 전체 사법 절차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그로 인한 통역 품질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일종의 통역사 풀(pool) 프로그램으로 통역사를 등록한다는 점에서 통역사 등록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역 서비스가 다음 사례들에서와 같이 이 등록 명부에만 엄격하게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락을 받은 통역인이 시간적으로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의뢰인의 부탁으로 변호사가 통역인 명부와 관계 없이 전문 통역 교육을 받고 경험이 많은 통역사를 고용하려고 할 때 명부에 없는 통역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때로는 법원에서 통역인 섭외가 용이하지 않을 때 아는 사람에게 해당 사건을 담당할 통역사 섭외를 부탁하거나 변호사가 주변에 외국어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지인이나 외국 연수 혹은 학업 경험이 있는 자를 개인적 친분으로 섭외하기도 하며, 심지어 변호사 자신이나 자원봉사자가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경우가 명부에 없는 통역인을 법원에서 고용하는 것이므로 현 사법 통역 제도를 구속력 있는 체계적 통역사 등록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 사법 통역사 공급 체

¹ 사법 통역을 제공하는 통역사에 대한 공식 명칭은 법원에서 ‘통역인’이라고 칭하므로, 이와 관련된 맥락에 한해 본고에서 ‘통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는 자격 및 인증 제도는 물론 과연 등록 제도로 칭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생길 정도로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등록 명부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편의상 부르기엔 이를 사법 통역 제도라고 할 수 있을 뿐 공신력은 크지 않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제도가 아닌 단순한 운영 '프로그램'이라 불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사법 통역과 국제회의 통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역사의 관점에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경험 및 간접적 관찰을 토대로 현 사법 통역사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2.2. 대안 마련

본 연구의 출발은 첫째, 관련 공식 제도의 도입과 정착 이전에 과연 전문 통역사들에게 법정 통역이 차별화된 매력을 지닐까에 대한 회의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일자에 두 통역 의뢰가 있다면 통역사들은 대부분 법정 통역보다는 국제회의를 비롯한 다른 전문 통역 행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문 통역이라고 부른 것은 통역 대학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 인정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전문 교육을 받은 통역사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조성된 공식 통역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둘째, 이 논문의 관점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법 통역사 자격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지속적 응시생 확보와 합격자들의 사법 통역사 자격 유지 및 관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이란 명목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관광 통역사, 컨벤션 기획자, 의료 관광 통역사, 그리고 최근의 법학 전문 대학원 등 매우 많은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막연한 미래 수요에 의거하여 시험 및 자격증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기존 유사 자격 프로그램과의 연계 혹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실무 현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 제도가 경쟁적으로 시험 운영 기관들의 수익 사업으로 전락해 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 결과는 이를 잘 보여 준다(이현주 2012 참조).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자격증이 총 몇 가지가 되는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고, 연구 차원에서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한 국가 자격증 수만 해도 100개가 넘지만 실제 직업으로 이어지는 활용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발급 기관은 물론 자격증에 대한 품질 관리 문제 또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혼선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법 통역사 자격증 제도 도입이 자격증 남발 시대에 또 하나의 자격증을 양산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현재 통번역 대학원에서 매년 배출되는 미래 통역사들로 인해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걱정하는 일각의 소리를 유념해 볼 때 이는 더욱 타당성 있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사법 통역사 자격증 과정을 이수한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과 기존 전문 과정인 통역 대학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상호 사법 통역 시장에 연계시킬 것인가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또한 자격증 제도 도입 후라도 사법 통역 시장에 자격증 소지자인 고급 통역 인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일종의 해결책과 절충안으로서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새로운 사법 통역사 자격 제도 도입 이전에 사법 통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 제도 점검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연구와 자문을 구해 궁극적인 자격 인증 제도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격 인증 제도의 필요성은 통역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 모두 감지하고 있고, 최근 계속해서 학술적 연구에서도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통역 오류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및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 인증 제도의 당위성만 강조된 가운데 장차 도입될 공식 제도로 이전하기 전인 현 과도기에서 실제 사법 통역사의 경험과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짚어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커뮤니티 통역으로서의 사법 통역계에서 통역사의 커뮤니티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진단해야 할 것이다.

사법 통역 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서비스 받는 사람(사용자)의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제도 정착은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통역사(제공자)의 처우 개선 및 근무 환경 개선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처우 개선은 통역사에 대한 대우와 통역료 인상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욱 절실한 것은 사법 통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통역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고질적인 애로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 보는 것이다. 제도 유무가 이 기본 원칙의 관건인 전문 통역사 확보에 따른 품질 높은 사법 통역을 곧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찍이 사법 통역사 자격 제도가 잘 정착된 국가에서조차 비자격자 통역사의 통역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래서 아예 제도 정착 자체를 자격증 소지자와 비자격증 소지자를 함께 명부에 올려 통

역 내용의 수준에 따라 이 두 그룹을 모두 통역사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제도 마련 담론에서 수요자나 연구자의 시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작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로서 사법 통역사의 경험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 목소리의 시작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법 재판과 사법 통역의 한 획을 그은 소말리아 사건을 포함하여 현장의 직접적인 사법 통역의 경험과 간접적 사법 통역 관찰을 바탕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아울러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언젠가 정착하게 될 사법 통역사 자격 인증 제도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커뮤니티 통역으로서의 사법 통역

2.1. 커뮤니티 통역의 특징

사법 통역은 의료 통역과 함께 대표적인 커뮤니티 통역 종류 중 하나이다. ‘커뮤니티’란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지역사회’란 뜻이 된다. 여기서 ‘지역’이란 말은 중앙에 대한 주변부 혹은 중심에 대한 지엽이란 정치적 함의로 오해될 수가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란 개인적 가족 단위 다음으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게 되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 일종의 ‘거주 지역’이란 말과도 같은 정치 중립적인 표현이자 개념이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주민은 물론 어떤 연유에서든 해당 지역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그와 연루된 모든 기관과 대상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한 나라 전체를 커뮤니티로 보기 때문에, 커뮤니티 통역을 광범위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커뮤니티 통역 개념 안에 국제회의 통역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Gonzales et al. 1991: 28). 그러나 이 두 종류의 통역은 교육 과정 개설 여부, 자격 제도, 그리고 진출 분야가 분명하게 구분되므로 이 둘에 대해 통역 수준이나 전문성의 고하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분명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류현주 2006: 93).

커뮤니티 통역은 상대적으로 전문 통역으로 자리를 잡은 국제회의 통역과 항상 여러 면에서 비교된다. 전문성 유무, 통역 품질 고하라는 논리에서 커뮤니티 통역은 항상 국제회

의 통역에 비해 전문성이 없고 통역 품질이 높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자아내곤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역사가 정식 통역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이들을 통역사로 섭외하고 지정하는 쪽에서도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문 통역 인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이’ 사법 처리 과정이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통역은 커뮤니티 통역인데도 아직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이 소통하는 언어가 다를 때 자연스럽게 통역 수요가 발생하는 기초 단위가 된다. 이런 점에서 커뮤니티 통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통역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통역사나 연구자 사이에서 가장 등한시된 분야이다(Roberts 1997: 127). 외국에서는 사법 통역사 관련 권익 단체도 많고 연구 또한 많으나 이제 막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회의 통역에 비해 아직도 커뮤니티 통역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러한 일종의 양극화 현상은 통역 의뢰인 측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인식의 차이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인식의 차이는 실질적인 통역이 행해지는 현장 환경, 통역 수급 시장, 그리고 통역사에 대한 처우에 반영된다. 사실상 의료 분야나 법 분야가 우리말로도 매우 어렵고 또 실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전문직의 최고봉에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만큼 이 분야의 통역 역시 전문직일 것이라는 인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커뮤니티 통역의 전문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전문 통역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커뮤니티 통역 시장의 수요는 거의 당사자나 관계자들이 외에는 공개되는 경우가 드물고, 공급 면에서 진입 장벽이 국제회의 통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외국어를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커뮤니티 통역은 전문 통역 교육을 받은 전문 직업인부터 좋은 의도로 무료 자원봉사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통역의 수준과 통역사의 전문성 정도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Roberts 1997: 130). 그래서 통역사 섭외의 수월성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가족이나 주변 지인 또는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례가 국제회의 통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이 국제회의 통역과 커뮤니티 통역이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커뮤니티 통역 서비스 제공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공식 자격 인증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항상 그때 그때 임시로 통역할 사람을 변통하여 사용하는 ‘임시 통역사(ad hoc interpreters)’(Mikkelsen 2004: 9)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2.2. 커뮤니티 고객의 특성

‘누구를 위한 통역인가’는 통역 고객의 문제이다. 이는 ‘무엇을 위해 통역을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커뮤니티 통역에서 통역 수요가 발생할 때 최종 고객은 국제회의에 비해 사회적 위상이 현저하게 다르다. 국제회의의 통역의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은 경제, 정치, 사회, 외교, 학계 등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힘있고 권력 있는 인사들일 때가 많다. 이에 비해 커뮤니티 통역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난민, 이주 노동자, 범죄 혐의자 등은 피고든 원고든,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심지어는 증인 입장이 될 때조차도 우리 사회의 ‘약자’ 위치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건강상 문제를 안고 의료기관을 찾거나, 직접 간접적으로 범죄나 소송에 연루되어 사법 기관을 찾는 커뮤니티 통역 고객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이다. 근본적으로 이들 고객은 우리말 소통 능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해서 의사 표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또 이로 인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위축감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한마디로 통역사들로부터 커뮤니티 통역 서비스를 받는 이들은 언어적·심리적 혹은 사회적 약자인 것이다.

통역 서비스란 의사 소통의 매개 역할이 주 임무이므로 통역사는 이들 최종 고객만이 아니라, 이들을 또 다른 고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혹은 법조계 전문인들을 위해서도 통역 서비스를 수행한다. 통역 서비스를 받는 최종 고객이 있고, 또 이들에게 의료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전문직 종사자 또한 서비스를 받는 이중 층위는 커뮤니티 통역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이다. 통역은 그래서 배경과 인식이 현저히 다르고, 힘과 지식 관계도 불평등한 이 양자 모두에게(Shackman 1984: 18) 만족스러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회의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므로 대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그에 따라 주최측이나 참가자, 발표자 모두 개인은 물론 국가적 위상을 대변하는 행사로서 회의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이에 비해 커뮤니티 통역 현장은 개인적인 민감한 사항으로서 당사자들이나 그 가족만이 관여되기 때문에 통역 성격은 공공 업무의 일환이지만 통역 현장은 폐쇄적이고 개인적이다.

이와 같이 심리적·언어적 약자인 이들이 법정에서 서야 될 때 언어가 장애가 되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므로 법정 통역은 이들의 공정한 법 처리를 위한 필수 사항이다. 이들의 기본 사법권 보장은 통역 서비스에 대한 최종 고객의 권리이자 법원의 의무이다.

3. 사법 통역의 전문성

3.1. 제고 방안

3.1.1. 통역사 실무 검증

통역의 비전문성은 한 마디로 3U(Untrained/Untested, Underpaid, Underappreciated)로 압축할 수 있다. 즉, 관련 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선발 시험과 같은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에 대한 공급 과잉으로 통역료 또한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통역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조차 모르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러므로 사법 통역사 공식 자격 제도는 3U의 타파로서, 사법 통역의 성격을 전문직으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법 통역의 전문화는 곧 그 선발과 자격 유지 조건이 엄격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 한국의 제도는 추천에 의한 서류 기반 선발 형식을 취할 뿐 실무 검증을 하지 않는다. 실무 전문직의 요체는 통역사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입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역사 입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인 통역사 입장을 먼저 살펴 보면 첫째, 해당 전문 능력의 교육 및 연수와 시험 또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통역 품질과 통역사 자격 유지를 위한 자발적 또는 제도적 재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격증 제도가 없더라도 현 제도 하에서 실무 중심의 정기적 연수와 세미나를 제공할 수는 있다. 여기에 명부 등록된 통역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합의가 도출되면 현 통역사들을 대상으로 실력을 타진해보는 시험 또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에 한해 통역사로 지정하여 사건 통역을 의뢰하며, 모든 사건이 평등하게 중요하되 사건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법원 당국에서 판단되면 그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통역사를 지정하기 위해 이 전문 언어 능력 그룹을 급수별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있었던 소말리아 공판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의 해적 재판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언론의 집중을 받았다. 소말리아 건에는 사법 쟁점에 있어 ‘관할권 문제, 통번역의 문제, 5일간의 국민참여 재판의 문제, 피고인 5명에게 각 5명의 국선 변호인 선정의 문제, 일반 재판과 국민참여 재판의 분리 문제 등 전례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정해영 2011: 125), 거의 모든 언론에서 사법 문제와 함께 통역 문제를 거론할 만큼 사법 통

역에서도 이 건은 시험대 역할을 하였다.

소말리아 해적 첫 공판에는 기존의 사법 통역사 명부에 있는 통역사 이외에 외부에서 한국어-영어, 영어-소말리아어 통역사를 주 통역사로 섭외하여 보강했고, 공판 첫날 오전 순차로 진행하다가 오후부터 시간 절약을 위해 위스퍼링으로 통역 방식이 바뀌었다. 그런데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재판 경험이 없는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통역 방식 변경으로 인해 기술 장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만 헤드셋을 착용하는 것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한편 통역사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위스퍼링하기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검찰 측 및 피고인 변호인, 증인, 피고인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했다. 통역 시간 또한 하루 8시간 이상 5일 연속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순차, 문장구역, 위스퍼링 등 통역 대학원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통역 방식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명부에 등록된 모든 통역사들이 그러한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 실시 이전에 현 통역사의 실력 재점검, 보강 및 관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법 통역사의 실력 검증에는 자격 인증 제도와 마찬가지로 수준별, 능력별 통역사 분류를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역은 구두로 발화하는 실무이므로 특히 현 사법 통역사들의 능력이 모두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수 내용 역시 능력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는 통역 방식을 짧은 대화, 긴 문장 순차, 동시(위스퍼링 포함)통역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기존의 지배적인 한국의 사법 통역 상황은 대화 혹은 짧은 문장의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의 능력과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짧은 시간 안에 연수를 통해 동시통역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에 앞서 통역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불규칙적 수요가 발생하는 사법 통역만을 바라보고 헌신적으로 그 어려운 과정의 연수에 참여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사법 통역사 제도 실시 및 정착 후 사후 대책 방안을 간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현 제도의 보강에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 될 것이다.

3.1.2. '고객 교육'의 필요성

사법 통역 제도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두 번째 관점은 사용자 측면, 구체

적으로 말해 고객 교육의 중요성이다. 교육 및 연수는 서비스 제공자인 통역사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 서비스 사용자 또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통역 의뢰처(통역 의뢰인 혹은 법원 행정처)이다. 이 중 실제 궁극적인 통역 서비스의 필요 대상은 법정에서 서는 피고/원고, 신청인/피신청인이 우선이다. 최종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행정부 직원, 검사, 변호사, 재판장 또한 통역을 의뢰하거나 통역 서비스를 받으므로 이들 또한 고객이다. 그래서 최종 고객과 고객으로 통역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의 명칭을 본 논문에서는 구분하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법조인(검사, 피고 및 신청인 측 변호사, 재판장)과 증인, 기소 과정에서 사법 절차에서 개입하는 경찰이나 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부서)은 결국 최종 고객의 사법 절차를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고객은 의뢰처가 아니라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자, 즉 최종 고객인 셈이다. 그런데 통역사의 일차 수요 판단은 고객이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법 통역에서 통역 서비스의 필요와 지정은 최종 고객이 아닌 의뢰처 즉, 법원에서 판단하곤 한다. 그 판단 근거는 해당 고객의 우리말 구사 능력을 들어보고 통역 필요 여부를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한 후 통역 언어와 통역사를 섭외 및 선정한다. 그래서 한국어 이외의 의사 소통이 국제어인 영어로 시작되다 보니 일단 법원의 권한으로 영어-한국어 통역사를 섭외하고, 나중에 고객이 영어 의사 표현에 한계를 느껴 영어 이외의 자국어인 다른 외국어로 통역사를 섭외해 달라고 법원 측에 청하는 경우도 있다.

통역사 선정과 취소를 서면으로 알리는 '통역인 소환장'은 해당 사건의 통역사와 비통역사의 구분을 공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명확히 한다면 적어도 통역은 법원에서 인정한 통역사에게만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경계 긋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지만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선결 과제는 자원봉사와 변호사의 통역 제공을 일체 금지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형식과 방식이든 제도 마련이란 결국 통역 품질 제고를 위한 것이나 이것이 갑측, 서비스 의뢰처나 사용자 시각의 통역사 자질 평가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전문 통역사들 사이에는 '고객 교육'이란 말을 하곤 한다. 이는 고객이 통역을 어떻게 의뢰하고 좋은 통역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시키고 확인함으로써 양자가 상호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의뢰하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를 통해 통역사, 즉 을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겠으나 무엇보다 갑의 연수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

문제들을 사례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법 통역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현 제도 하에서 법원에서는 공식 소환장 없이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곧 법원 행정 부서로 와 달라고 전화로 급하게 통역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예 피고에게 통역사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직접 피고와 통역사가 전화 대화를 나누거나 피고의 수행 통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모두 사법 통역사는 법정 밖에서 변호인이나 경찰 혹은 사법 당국 관계자의 입회 없이 해당 건에 대한 통역을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의사소통의 장애에 직면한 법원 행정 직원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일 처리에 치중할 경우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사법 통역사들 또한 피고나 피고 관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고, 사법 통역일로서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실제 도와 준다는 '좋은 의도'만으로 원칙이 깨지기도 한다. 법원 행정처의 직원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자신들의 소통 능력 부재 혹은 편의성이란 이유만으로 법원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역사와 피고 또는 피해자 혹은 그 가족 및 지인들이 통역사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거나 불평을 호소하고, 최악의 경우 사법 처리 문제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법 통역 현장에서 통역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충격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 전문인들이 영어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요약해 달라는 주문을 받는 것이다. 축약 통역은 단어나 표현 길이의 압축이 아닌 한 정확성을 담보로 하기가 쉽다. 이는 같이 통역을 하는 다른 사법 통역사에게서 전문 통역사들이 문제점으로 발견하는 현상이다. 또한 변호사 중에는 본인이 영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통역을 안 해도 된 다거나 통역사를 배제하고 원고(피신청인)나 피고(신청인)와 직접 외국어로 접견을 하기도 한다. 사법 통역사의 최종 고객은 변호인이 아니라 피고나 원고로서 이들의 입이 되어 이들의 입장을 말하는 그대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법 통역 제도 담론에서 이 통역의 최종 고객은 법원도 변호사를 위시한 법 전문인도 아닌, 여러 모로 약자의 입장에 놓인 피고나 신청인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법 통역사는 서비스를 받는 최종 고객의 입이 되어 들은 그대로 주관적 가감 없이 정확하게 통역해야 한다. 공식 사법 통역사 자격증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다. 능력 있는 통역사 확보는 결국 최종 고객

의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권 접근을 보장하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통역사들의 경험담을 보면 실제 통역을 완벽하게 변호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반드시 통역사를 통해 피고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한국어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혹시나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가 변호사와 통역사 사이에 오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최종 고객들은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말을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역이 되지 않으면 이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통역인 소환장을 보면 제일 첫 머리에 '위 사건에 관하여 통역인으로 신문하게 되었으니 00시에 어느 법정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통역인의 업무는 분명 '통역인'으로 국한시키고 통역 서비스가 신문 과정에 사용됨을 명시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통역인이 신문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신문 과정에 필요한 변호사와 최종 고객을 위해 소통의 가교(架橋)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직무 성격이 분명 '통역인으로서'가 아니므로 신문을 하지만 '통역인'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최종 고객의 법정/법적 대리인일 뿐 언어/의사 대리인은 아니다. 물론 신뢰를 받지 못할 정도로 통역 품질이 양호하지 않을 때 현실적으로 통역 현장에서 변호사가 통역사에게 오류를 지적하며 직접 정정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통역사의 확고한 실력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3.2. 쟁점과 제언

공신력 있는 사법 통역사 자격 인증 제도가 반드시 국가나 지방 주도형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통역인 명부(Registry)가 통역사의 능력과 통역 품질을 보증하는 신뢰의 표상은 더더욱 아니다. 미국의 청각 장애자를 위한 통역사 자격 제도인 RID(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는 비영리 민간 기관으로서 장애인 협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선발 및 자격증 부여 및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수화 통역 자격 인증에서 가장 큰 공신력을 얻고 있다. 비록 자격 제도는 아니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별로 매년 통역인 등록제를 운영하여 확보하고 있고, 이 명부를 공개하여 공식적으로 활용하지만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사법 당국에서 통역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전문) 통역

사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통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란 뜻의 '통역인'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도 변호인이란 용어로 대치되어 상호 모두 사용되므로 명칭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법원에서 사법 통역 경험에 대한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뜻이 있는 사람들이 통역인으로 지정되었을 때 직장에 공무 처리를 인정받기 위해 공문 발송을 의뢰해도 협조를 해 주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면 '통역사'와 '통역인'은 글자와 단어의 단순한 차이 이상의 함의가 내포된 것일 수 있다. 즉, 통역사는 전문직 통역사이나 통역인이라면 그저 통역하는 사람에 그칠 뿐이다.

통역 대학원에서 통역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법 통역사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전공자이거나 어학 연수 등 해당 외국어 사용 국가 체류 또는 이전 통역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통역인으로 법원 명부에 올려 놓고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통역을 제공하는 간헐적 통역 서비스 제공자들이다. 비정기적 수요로 인해 안정된 직업으로서 뿌리 내리기 힘든 일의 특성도 있으나, 통역 내용이 어렵고 통역 오류에 따라 통역인 자신이 위증죄로 사법 처리될 것임을 주지시키는 서약서 작성, 그리고 일하는 환경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분위기, 불충분한 통역 준비 자료, 기밀 유지의 특성상 혹은 통역 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료 협조에 대한 비협조적 관행 등 통역사에게 국제회의 통역에 비해 분위기 자체가 매우 다르다.

전문적인 통역이지만 상당수 비전문 통역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현 제도는 상반된 모순을 보인다. 대학원 이상의 전문 공식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 후 경험을 축적해온 통역사들은 사법 통역보다는 국제회의 통역을 선호한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법 통역 경험이 남에게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보여주는 명예 훈장이 된다. 또한 사회 경험과 연륜이 쌓인 사람들의 자원봉사 사법 통역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회 기여의 모범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한다. 이는 남을 돕는 봉사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법 전문 통역이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자원봉사를 제외하고 비전문 통역인에게 사법 통역이 매력적인 것은 통역료 산정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 거부할 수 없는 수입원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3U의 마지막 U, 저평가된 통역료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2U, 즉 통역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거쳐 평가와 인증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통역일인 점을 고려하면 국제회의를 제외한 타 통역일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사법 통역은 기본적으로 첫 30분까지 7만 원이

책정되고, 이후 30분 단위로 5만 원이 추가 통역료로 산정되며, 때에 따라서는 저녁 5시 이후에는 통역료가 증액될 때도 있다. 같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타 통역이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데 비해 사법 통역은 기본적으로 일일 교통비도 통역료에 추가 지급된다. 그러므로 비전문인에 의해 제공되는 통역으로서 3U 중 다른 두 특징은 사법 통역에도 적용되지만, 통역비에 해당되는 Underpaid만큼은 예외적이라 볼 수 있다. 같은 대표적 커뮤니티 통역인 의료 서비스 통역은 공공 대민 봉사 차원에서 통역비 없이 자원봉사나 최저 교통비 정도만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법 통역은 우리 사회에서 대접 받는 통역인 셈이다. 이는 비전문 통역인도 통역료 면에서 통역사로서 대접 받는 현 우리나라 사법 통역 체제의 모순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이다.

참고 문헌

- Gonzalez, V. and Mikkelson, H. (1991). *Fundamentals of Court Interpretation: Theory, Policy and Practice*.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 Mikkelson, H. (2004). The Professionalization of Community Interpreting. November-December, AIIC webzine.
- Roberts, R. P. (1997). Community Interpreting Today and Tomorrows. On Peter Krawutschke, ed. *Proceedings of the 3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Medford, NJ: Learned Information, 127-138.
- Shackman, J. (1984). *The Right to be Understood: A Handbook on Working With, Employing and Training Community Interpreters*. Cambridge, England: National Extension.
- 류현주 (2006). 커뮤니티 통역의 전문성 제고 방안. 『번역학 연구』7(1): 87-103.
- 이현주 (2012). 국가 자격 많지만 관리 능력·활용도 떨어져. 뉴시스 4월 8일자 기사. <http://news.nate.com/view/20120408n01364?mid=n0411>.
- 정해영 (2011). 소말리아 해적 재판에 있어서의 헌법 원리의 적용. *Donga Law School Journal* 1(2): 125-138.

Author's email address

juru2k@pufs.ac.kr

About the author

Hyunju Ryu is an Associate Professor and a practicing conference/court interpreter, teaching Korean-English major at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